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의견
청취 등〉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453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5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8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대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0. 2.

(3) 회 부 일 : 2025. 10.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인력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료, 필수 의료, 기초의학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 육성·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하여 교육부와의 협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의 도입 및 기초·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

며,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채용지원 등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의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교육”을 “학교 교육, 수련, 보수 교육”으로 구체화하며,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의학 또는 필수의료 전공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 및 취업연계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 ----- ----- ----- ----- ----.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보건의료인력의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② -----

②·③ (생략)	<u>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u> <u>취업연계 등 지원사업</u> ②·③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최근 디지털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 또는 융복합 형태의 의약품 등이 등장하는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필수의료 분야는 대형 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 환자의 구급차 사망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음.
- 따라서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을 도입하며, 기초·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규정으로도 달성 가능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상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¹⁾ 2021년 3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이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음.
[참고자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교육·훈련도 포괄하는 것임.

더욱이 현재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²⁾에 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인력 양성·확보 및 인력개발을 위한 노력 의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대안 제18조) 지역필수의사 지원(대안 제19조),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대안 제21조)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둘째, 개정안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대상은 “보건의료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7.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2) 2025.9.24. 의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자격관리·학교 교육·수련·보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인데, 이는 관련 학교에서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달리 개정안에서 새로 추가한 “학교 교육”을 제외하면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부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셋째, 개정안은 기초의학을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면역학 등 의학의 기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면서 기초의학 전공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분리가 어려운 분야도 존재하여 기초의학 전공 보건의료인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한기초의학협의회에 따르면, 학문 영역의 성질상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최근 교육 및 연구에서 기초와 임상 간의 연계가 활발해지면서 이들 사이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진다고 언급한 바 있음(기초의학백서, 2015).

□ 참고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 파악,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반적인 보건의료 발전 방안 등을 연동하여 이를 수립할 예정으로, 각각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 중에 있다고 밝힘.³⁾

3) -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진행 중(~’25.12)

- (수급추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25.7)을 통해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구체적 사항 논의 중(현재 제6차 수급추계위 진행 (’25.10월))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현행 규정으로도 학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 의견 반영이 가능함.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평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관계 부처 간 상시 협의 중
-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은 기존 규정으로도 실시 가능함. 현재도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한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법,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료사관학교법 등 여러 법안이 논의 중이므로, 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도 해당 법안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대한의사협회 (신중검토)

- 현행 규정상, 교육부 포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참여 근거가 존재하며, 오히려 법령 개정을 통해 부처 간 행정적 관할권 충돌 우려가 있음.

- 의료인력의 학교 교육(의과대학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관할임.

□ 인공지능 등의 교육·훈련은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도 가능하며,
오히려 교육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교육 현장의
자율적 판단과 전문성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초의학·필수의료 인력 부족에는 공감하나, ‘필수의료’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필수의료에 해당하지
못한 분야의 상대적 소외 및 지원 불균형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의료분야의 기능이
필요하며, 따라서 모든 영역이 필수적 성격을 가짐.

3) 대한한약사협회 (수용)

□ 법안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함.

4) 대한방사선사협회 (수정수용)

□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과정에서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을
추가하여 의료기관의 실습교육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행정중복의
우려가 있어 교육부 장관의 의견 청취는 필요시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5)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수용)

- ☐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전문화된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 인공지능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기여함.
- ☐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인력 공백 문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함.

6)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수정수용)

- ☐ 실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시, 의사·간호사 중심으로 한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인공지능 교육 지원사업 등에서는 치과기공사 직종이 명확하게 포함될 필요가 있음.

7)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정수용)

- ☐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은 대부분 사설 간호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교육’으로 한정할 경우 인력 양성 지원 정책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 ☐ 대부분의 사설 학원은 인공지능 활용 교육, 훈련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정부 지원방안 병행이 필요함.

-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전공 보건의료인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간호조무사 등 비학위 기반 인력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8)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정수용)

- 기초 분야는 의학뿐만 아니라 치의학에서도 반드시 교육되어야 하므로 “기초치의학”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2021.3.기준)

구 분		소 속	직 위
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노동자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비영리 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료인력 단체	의료인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대한한 의사협회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의료기사 단체 등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협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협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대한안경사협회	윤리이사
	약사 단체	대한약사회	부회장
	기타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부회장
의료기관단체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전문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임기 2년